

## 中長期 電氣消費節約 推進方案



動資部 電力運營課  
行政事務官

黃 奎 浩

### I. 序 說

지난 '90년 여름 世界の 火藥庫인 中東에서 걸프戰 발발후 그간 不必要하거나 浪費性 消費를 抑制키 爲하여 節電告示의 改正, 電氣料金 調整, 汎政府차원의 電氣消費節約 促進大會, 節電캠페인등 諸般 施策과 弘報手段을 총동원하여 節電을 誘導해 왔으나 現在 와 같이 民主化·開放화된 “열린사회”에서 이러한 規制·禁止·他律爲主의 政策으로서는 國民에게 不便을 주는 制度로 認識되어 呼應도가 낮아 所期의 成果를 거둘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91年 5月 政府는 위와는 正反對의 側面에서 節電政策을 樹立하게 되었다. 즉, 보다 根本的이고 實質的인 節電環境을 조성함으로써 소기의 節電成果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모든 節電 可能分野에 相對的 利益賦與를 통한 助長, 自律爲主의 節電施策을 마련케 되었다.

위와 유사한 視覺에서 最近 日本學界는 電力需給 安定對策의 一環으로서의 “電力供給側面”에서 美國 電力會社에서 현재 導入, 施行中에 있는 “需要側面”에서의 DSM(Demand Side Management)制度의 導入으로 절전정책의 방향 전환을 檢討中에 있다.

## II. 現行 節電政策에 대한 各界의 反應

### 1. 序

우선 中長期 節電政策 方案을 論述하기에 앞서 '91. 5월 學界, 韓電, 電氣機器製作業界 및 電氣業界의 專門家가 모인 자리에서 “現行 節電施策의 問題點과 向後 中長期的 改善方案”이라는 討議課題를 갖고 各界의 의견을 청취, 整理한 資料를 열거해 보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조식으로 약간 紹介하기로 한다.

### 2 各界의 反應

※ 各界人士의 機關, 職·姓名은 事情上 A.B...로 標記 한다.

#### (A)

○ '91. 5월 現在 電力需給 事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전력예비율이 불과 2~3% 수준)

－ 이에 따라 그간 節電施策을 펴는 과정에서 상당한 成果가 있었으나, 根本的이고 體系的인 消費節約 施策을 講究한다는 側面에서는 多少 미흡했음.

－ 國民所得 水準이 向上됨에 따라 國民에게 不便만 주는 施策은 國民이 自發的으로 따르기가 어려워 소기의 節電成果 期待는 곤란(네온사인 使用制限, 에스컬레이터 使用中止, 가로등 隔燈制 등)

－ 이에 따라, 우리 생활주변에 節電할 수 있는 Idea 方案들을 體系化, 制度化하여 自發的으로 실감있게 節電할 수 있는 方案의 모색 필요

#### (B)

○ 그동안 政府의 節電施策이 그때 그때의 狀況 대응 위주 施策이었음.

－ 이에 따라 보다 根源的인 節電施策의 體系化, 綜合整理 필요

• 그간 電氣消費 性向 및 構造, 節電政策 展開狀況

• 節電施策의 節電量 測定, 檢證, 向後 展望

• 長短期 電氣消費節約 政策의 樹立

○ 에너지節約 政策의 管理, 監督機能 微弱

－ 法슈이 있더라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 效果가 미미한 바, 에너지 評價制度의 導入 實施로 에너지節約企業의 育成 필요

○ 建物 前·後로 區分하여 政策施行 필요

－ 직접적으로 建物에 대한 電力需要 管理를 위해서는 新築때부터 節電機器의 開發, 普及誘導 필요(政府의 補助金 支援 등)

－ 建物前

• 건축형태, 放熱機器 설치 등에 대해 現行 法律은 技能別로 細分化 되어 있지 않고 있어, 建物 設計 當時에서도 高效率機器의 設置 計劃등을 반영한 綜合的인 設計 필요

• 管理監督을 하는 市·郡에는 專門 知識이 없어 事前檢査가 形式化되고 있음.

－ 建物後

• 現在 에너지 利用機器, 施設의 運用技術 水準이 未洽→事後管理制度 필요(에너지 利用機器의 效率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機器의 作動은 正常的인 가 등의 點檢)

○ 電氣料金を 통한 間接的인 電力需要管理는 長期的으로 限界가 있음.

○ 보다 長期的으로 과감한 研究開發 投資가 필요

－ 이 경우 관련자료의 公開·流通·交換하는 制度 마련 등

－ “電力投入量과 電氣使用量과의 比率”의 增大 側面에서 節電機器 開發 接近 필요

○ 既存 節約機器와 技術을 잘 活用하더라도 現實的으로 節電效果 期待可能

－ 그러나, 消費者들은 機器의 色相, 디자인 등에만 관심이 있고 機器效率에 대해서는 잘 모름

－ 따라서, 節電機器에 대한 消費者들의 誘因策 講究 必要

• 流通過程에서 販賣商에게도 가장 利潤이 높도록 하는 方案 講究

• 節電機器의 開發, 生産이 生産者(企業)에게도 利益이 되는 方案 講究

－ 高效率 에너지 機器에 대한 政府, 韓電 등 영향력 있는 機關의 弘報, 支援으로 普及 擴大 必要

○ 短期的으로 電力需給이 심각한 경우 消費者에게 強制할 수 있는 制裁手段도 필요(에어콘 稼動時間 規制 등)

－ 電力會社 立場에서 「적게 팔고 많은 利潤」이 있도록 節電投資 方案 講究 必要

• 에너지節約促進班 編成 稼動→效率診斷

→消費者에게 改善方案 提示→消費者가 改善조치→  
이러한 消費者에게 投資 支援

(C)

○ 電子式螢光燈은 既存 在來式 製品보다 20%  
의 節電效果가 있으며, 壽命이 짧고 價格側面에서 4  
~5배 高價

- 따라서, 價格에 관계없이 指定된 場所에 대  
규모의 螢光燈을 設置하여 줄 것을 요망(先設置 後  
結果檢討)

- 電子式螢光燈을 製作하는 業體가 中小企業  
인 만큼 生産에만 專念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 政府側에서 擴大普及할 수 있는 施行細  
則등의 法制化 마련

• 韓電에서도 先導的으로 적극 普及하겠다  
는 意志 요망

(D)

○ '90年度에 電子式安定器 比較展示會를 갖은  
바 있고, 在來式螢光燈과 電子式螢光燈을 比較 檢討  
中이나,

- 電子式이 節電效果(백열등의 1/5정도 電氣  
使用)는 있으나, 壽命이 짧고 價格이 高價이고 電波  
妨害 問題는 實證實驗 필요

- 특히, 電子式螢光燈에 있어서 “大量 生産時  
生産原價가 얼마인지”에 대한 諸般 調査가 先行되어  
야 하고, 韓電도 이를 支援할 수 있는 方案을 檢討中

(E)

○ '91年度 韓電의 研究開發 支援資金이 200억원임

- 電子式螢光燈 開發에 관하여 韓電에 研究  
申請을 해보는 것도 한가지 方案이 될 수 있음.

(F)

○ 電子式安定器 製作業體로서 KAIST와 共同研  
究 開發하여 普及中이고, 外國에도 輸出中임.

- 國防部, 通信公社에도 既 納品중

○ 美國은 3年마다 螢光燈을 交替하도록 하고  
있음(총무처 내규 : 5年)

○ 業體가 난립되어 있어 輸出價格보다 內需供  
給價가 낮음

- 在來式螢光燈보다 3배정도 高價이고 技術  
을 開發하더라도 在來式보다 2배이상 高價일 수 밖

에 없는 실정

(G)

○ 照明器具 交替費用이 建物管理 費用의 25%  
水準이나, 國產化가 아직 안되어 있고, 輸入品이 國  
產品보다 收支側面에서 良好

- 電球의 壽命이 從前보다 1/2水準이어서 國  
家的으로 큰 損失인 만큼, 國產品은 우선 壽命등에  
있어 信賴性부터 확보해야 할 것임.

- 한편, 設置場所(工場, 事務室등)에 따라 耐  
久性이 각각 다름

○ 禁止, 規制보다는 自發的으로 節電하는 政策  
의 開發이 필요하고, 政府 政策의 一貫性 維持 필요

- 美國의 경우 '95년까지 節電型機器의 設置  
를 義務化하고 있음.

- 水蓄熱機器 외에도 “리베이트” 品目 擴大  
요망

○ 가스 冷房器는 義務事項이나 水蓄熱機器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서울시의 경우 水蓄熱 冷房  
을 기피하고 있음.

- 따라서, 水蓄熱機器에 있어서도 가스冷房器  
와 同一 次元에서 普及할 수 있는 여건조성 필요

- 특히, 產業體등이 水蓄熱등에 의해 冷房을  
할 경우 契約電力의 基本料金を 差等 徵收하는 것도  
필요

(H)

○ 에너지 節約機器로서 “Inverter”의 경우, 負荷  
管理나 배수펌프장에 유용하나, 서울시 하수도국의  
경우, 예산이 없어 사용못하고 있음(“중량천”에만  
Inverter 使用中)

- 製品生産이 初期段階인 만큼 弘報가 안되  
어 있어 電氣技術者로부터 信賴性 確保가 어려운 실  
정임.

에너지管理公團, 韓電이 주도하여 全國의  
인 「봄」 조성 필요

- '90年度에 청평 揚水 發電所에 納品한 실적  
도 있어, 大容量 負荷 管理外에 “中負荷” 管理側面에  
서도 使用토록 조치 요망

(I)

○ 韓電이 施行中인 電氣負荷 料金制度는 冷房  
負荷에는 별 利得이 없어 改善 요망

(J)

○ 産業用 電力機器의 高效率化를 위해 韓電에서 節電機器 購買時 綜合落札制 範圍의 擴大 요망

－ 現在 照明機器는 「團體隨意契約品目」으로 指定되어 있어 調達廳은 組合과만 契約·締結하고 있고, 이 경우 最低價格 落札制로 契約締結, 運用되는 실정으로 高效率機器의 開發 普及은 事實상 不可能

○ “高效率”에 대한 概念의 定義가 애매모호하고, 評價基準도 다양하여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적용키 어려운 점이 있음.

○ 에너지 節約機器의 開發에는 우선 尠大 投資費가 소요되는 만큼 節電機器의 使用을 義務化하는 方案 필요

－ 高效率機器의 信賴度 提高 및 普及 擴大를 위해 KS규격의 擴大, 業體와 韓電間 共同研究 推進 필요

(K)

○ 國內企業은 주로 外産製品을 輸入, 使用하다 보니 基礎 專門知識이 별로 없고, 大型빌딩 工事時 節電機器 Inverter 設置 義務化 方案 시행 요망 (稅制, 金融支援, 諸般節次 및 具備書類 簡素化등)

○ 金融業과 不動産業을 同時에 하는 業體에 대해서는 韓電의 R & D자금을 支援하지 않고 있어, 이러한 條件의 撤廢 요망

(L)

○ 螢光燈이나 照明機器등 에너지 節約可能 品目이 “中小企業 優先購買品目”으로 規定되어 있어 品質이 不良하고, 이에 따라 消費者들은 外産製品을 購入, 使用하는 傾向이 있음

－ 따라서, 照明器具등은 商工部와 協議하여 “團體隨意契約品目”에서 제외 필요

○ “룸에어콘”의 경우 節電效率를 記載하고 있지 않고 있어, 節電效率를 明示한 機器에 대하여는 特消稅 減免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갖도록 制度改善 요망

○ “電子式螢光燈安定器”는 KS 規格이 없어 이에 대한 規格制定 필요

(M)

○ 韓電의 電力政策은 短期的으로 에너지 Saving, 長期的으로 Conservation을 目標로 하고 있고, 특히 電

力需要의 急增을 抑制하고 電氣의 合理的 使用誘導를 위해서 高效率機器의 開發·普及·擴大를 推進중임

－ 이런 側面에서 長期的으로 氷蓄熱機器의 普及·擴大를 推進하고 있고, 이를 위해 諸般 支援方案을 講究中

○ 韓電의 “R & D”자금을 運用하는 立場에서 볼 때, 에너지 Conservation 側面에서 業界의 機器性能을 開發하는 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이런 側面에서 韓電의 예산심의에서도 優待策 강구 必要

○ 照明機器 業體가 너무 많은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檢討 必要

III. 中長期 電氣消費節約 推進 方案

1. 基本方案

○ 모든 電氣消費節約 關聯分野에 「相對的 利益賦與」를 통한 自發的인 消費節約 環境을 조성함으로써 소기의 節電成果를 擧揚하는데 중점을 두고

－ 이를 위해 「節電製品의 開發普及」「設備 또는 工程의 最適化」「節約技術의 開發·普及」을 중점 추진 분야로 설정하였다.

2. 推進 方案

위에서 記述한 方向에 따라 現行 支援制度를 總體的으로 活用함과 同時에 既存制度의 일부를 補完하는 側面에서 그 推進 方案을 개조식으로 열거하고자 한다.

가. 節電機器 開發 業體에 대한 資金 支援

○ 節電製品을 「工業基盤 技術開發課題」로 指定함과 同時에 同 製作業體에 工業發展基金등(融資 5~6%)을 통한 長期 低利融資

○ “機器類·部品 및 素材産業育成品目”으로 告示를 통한 中小企業構造調整資金 支援

○ 開發된 製品은 「大量生産品目」으로 지정하여 長期 低利融資

○ 韓電에서 資金支援(氷蓄熱機器등)

나. 節電機器 製品 販賣 促進

○ 「優先購買對象品目」으로 指定

○ 隨意契約, 制限競争契約 制度 導入

- 다. 官給資材로 指定하여 普及 擴大
  - 「調達物資」로 指定을 통한 官公署에 普及擴散
  - 이를 통한 節電製品의 民間企業에 普及誘導

- 라. 稅制上 特惠를 통한 節電機器의 普及 擴大
  - 節電製品은 特消稅 引下
  - 外産으로 購入하는 節電機器는 關稅率 引下, 通關節次의 簡素化

- 마. 需要者의 選好購買 心理 活用
  - 節電機器에 대한 力率表示·色相·디자인 開發등
  - 節電機器·製品에 대한 特消稅 差等 適用(세탁기·음향기기·냉장고·TV 등)

- 바. 節電方式에 의한 住宅·빌딩工事 권장
  - “에너지 節約 設置工事費”는 課稅標準額에서 控除
  - 에너지 절약설비를 설치한 建物은 住宅債權·地下鐵公債·上水道公債의 購入免除 또는 減免
  - “에너지 節約設備 設置所要面積”에 대한 地

方稅·法人稅·土地超過利得稅등 減免

사. 關係部處의 節電關聯 法令의 改正·補完으로 總體的인 節電體系 確立

- 主要 補完對象
  - 特別消費稅法
  - 豫算會計法
  - 關稅法
  - 建築法
  - 地方稅法 施行令
  - 法人稅法 施行規則
  - 租稅減免規制法
  - 住宅建設促進法
  - 特許法

3. 關聯法·制度의 改正 補完(案)

이러한 法令에서 改正·補完되어야 할 구체적인 事項을 提示해 보면 다음과 같다.

〈關聯法制의 改正 補完(案)〉

法律名	現行規定	改正(案)	備考
1. 特別消費稅法 ○ 에너지소비절약 기기의 특소세 면제  ○ 200V 전용전기 기기에 대하여 특소세 차등 적용	제1조 제2항 제16호 (특소세 부과대상 물품 및 세율)  ○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가정용에 국한)－물품가격의 15/100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전기사용물품에 대한 정격 전압별 세율 구분이 없음 ○ 제2종 1.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2. 냉장고와 냉동고 가. 대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 단서조항 신설 단, 에너지 소비절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 ※ 「영」에 정할 사항 - 빙·수축열 냉방장비 - 히트 펌프 - 온풍기(세라믹 벽돌)  ○ 제2종 개정 1.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나. 기타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5 2. 냉장고와 냉동고 가. 대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효과 : 200V전용기기 보급 촉진에 따른 전력손실 감소

法 律 名	現 行 規 定	改 正 (案)	備 考
	<p>나. 소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3. 전기세탁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4.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대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나. 소형의 것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다. 동 관련제품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5. 전기음향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기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나. 소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3. 전기세탁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나.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4. 천연색 텔레비전 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대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나. 소형의 것 -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5 -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다. 동 관련제품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5. 전기음향기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0</p> <p>나.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20</p> <p>6. 전기·전열·가스이용기기 가. 정격전압 220V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5</p> <p>나. 기타의 것 - 물품가격의 100분의 15</p>	
<p>2. 豫算會計法 施行令 ○ 에너지 절약형기 기 개발품목에 대한 수의계약제도의 도입</p>	<p>○ 제104조 제3항 - 규정없음</p>	<p>○ 추가(5號 신설) - 工業發展法 第12條에 의하 여 상공부장관이 에너지 절약형 기기로 개발, 승인한 품목으로서 생산자가 1人뿐인 경우에 그 생산 자로부터 제조·구매할 경우 추가</p>	<p>※ 상공부에서 개발품목승인 시 에너지절약 형기기 표시 필요</p>

法律名	現行規定	改正(案)	備考
○ 발전용기자재중 소비절약형 외자기입시 수의계약제도의 도입	○ 제112조(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 소비절약형 외자기입시 수의계약제도 없음	조항 신설 - 발전용 기자재로서 전력소비절약형 외자를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때	※ 대상 외자 물품에 대한 용량·규격·성능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조정·검토후 별도지정 필요
3. 關稅法 ○ 發電用 機資材中 전기소비절약 물품에 대한 關稅引下	第29條 第6項(특정물품 감면세) - 현행 지원제도 없음	○ 추가조항 신설 - 발전용 기자재중 전력소비절약을 위한 물품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	※ 關稅 引下 率 및 對象은 추후에 별도 검토
4. 建築法 ○ 건물 신축시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면적의 算定 ○ 호화 주택의 동력시설 제한 ○ 건축허가 절차 개선	○ 현행 규정 없음 ○ 현행 제한규정 없음 ○ 현행 규정 없음 (외부단열·옥상단열에만 한정되어 있음)	○ 面積算定時 電氣節約 設備에 소요되는 면적(永蓄熱기등)은 未算定 ○ 3층 이하의 고급빌라·주택·공동주택의 에스컬레이터 설치 금지 ○ 건축허가 신청시 구비서류에 에너지절약 방법을 기재한 서류 제출 의무화	※ 미산정시 재산세 감면 및 용적율 개선
5. 地方稅法 施行令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에 대한 지방세 감면	○ 第84條의 4 제3항 제5호 - 업무용 토지 인정범위 산정시 건축면적에 용도·지역별에 따라 차등 배율 적용	○ 추가 - 에너지절약 설비에 소요되는 면적을 추가하여 적용	※ 효과 추가인정시 비업무용 토지면적 축소 - 이 경우 취득세·종합토지세 감면혜택 발생
6. 法人稅法 施行規則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 소요면적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 7. 租稅減免規制法	○ 제18조 제3항 제2호 나 목 (내용 上同)	○ 上同	※ 효과 -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감면 ※ 효과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공사 비과세표준액 감면	○ 감면제도 없음	○ 추가신설 - 에너지절약 설비 설치공사는 과세표준액에서 공제	- 취득세·등록세 감면
8. 住宅建設促進法 ○ 에너지절약설비 설치건물 신축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건물신축시 주택채권 매입 제도화	○ 에너지절약설비를 설치한 건물에 대하여는 주택채권 매입 면제	- 주택채권·지하철공채·상수도공채 매입 면제

法 律 名	現 行 規 定	改 正 (案)	備 考
9.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施行規則	○ 第18條(전기용품의 표시) - 전기기기 力率規制 및 表示 事項 없음	○ 告示改正 - 전기기기의 기준역율이 90 %이상 되도록 규제 및 표시의무 화(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할 수 있 도록 하고 있음)	※ 효과 - 전력손실 감소 - 전기품질 개선(저전압현 상 해소) ※ 에너지 이 용 합리화 법 제11조 제3항, 동자부고시(85 -2)에서는 규 제하고 있음
10.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 광고물 등 설치 허가기준 강화 및 사 용방법 제한	1. 제13조 제1항 별표12의 옥상광 고물(네온싸인.광고탑 등 포함) - 사용시간 : 제한없음 - 최대규격 : 가로×세로×높 이(20m×15m×15m) 2. 제13조 제1항 별표14의 지주 이용 간판 - 자기소유 화단 또는 사유지, 공한지등에 화단조성후 설치할 수 있음. 3. 제13조 제1항 별표 16의 이·미 용소의 사인볼 - 1개업소에 1개만 설치 4. 제13조 제1항 별표17의 주유소 풀싸인 - 1개업소에 1개만 설치	○ 기설치 광고물 - 사용시간 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 광고물 - 허가제한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간판 - 기설치간판 : 사용시간 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 : 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 : 강제철거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사인볼 - 기설치간판 : 사용시간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 : 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 : 강제철거 ○ 설치허가기준에 의한 풀싸인 - 기설치간판 : 사용시간 조정 또는 사용제한 - 신규설치 : 허가제한 ○ 무단설치간판 : 강제철거	○ 불법 설치 된 간판철거시 많은 전기절약 효과 기대

#### IV. 向後 計劃

○ 그간 開發된 節電機器에 대하여는 위에서 論述 한 諸般 支援方案에 따라 普及을 적극 擴大할 계획 이고 이러한 次元에서 '91. 8. 1 商工部에서 추진하고 있는 “機械類·部品 및 素材산업 육성품목”으로 빙축 열기기를 제품을 발굴, 告示하여 장기저리용자 조건인 中小企業構造調整資金을 통하여 적극 開發·普及토록 조치한 바 있다.

○ 한편, 아직 開發中이거나 開發되지 않은 品目·

機器에 대하여는 學界·研究所등 전문기관으로 하여 금 우선 節電對象 分野나 品目, 機器등을 發掘·調査 토록 합과 동시에 동 세부지원 方案을 樹立 推進중 에 있다.

이에 대한 諸般調査, 研究作業이 마무리 되는대로 동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關係部處와 協議, 보다 根本的이고 構造的인 節電政策을 樹立·推進할 方針 이다.